

대구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2008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익현

피 고 1.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C

3. 망 B의 소송수계인 D

4. 망 B의 소송수계인 E

5. 망 B의 소송수계인 F

6. 망 B의 소송수계인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

변론 종결 2020. 11. 12.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D와 망 B,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269,776,0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A은 269,776,011원,
 - 나.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피고 C, D, E는 각 33,722,001원, 피고F은 20,233,201원, 피고 G은 13,488,8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 D의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는 그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대출금액을 각 대출받았다.

	약정체결일	보증원금 (변경)	보증기한 (연장)	대출금액
1	2015. 11. 3.	90,000,000	2016. 11. 3. (2019. 11. 1.)	100,000,000

2	2015. 11. 16.	972,000,000 (486,000,000)	2023. 11. 16.	1,080,000,000
3	2016. 12. 19.	270,000,000	2017. 12. 19. (2019. 12. 29.)	300,0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H는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당시 H의 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H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등

1) 피고 D는 2018. 5. 24. 어머니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아들인 피고 A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5. 망인과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이 2020. 2. 15.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각 1/4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망 J의 상속분(1/4)은 그의 배우자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G이 각각 3/5, 2/5의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3) 피고 A은 2020.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0. 2.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H는 2019. 10. 17. 분할상환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3. 17. I에 연체 대출원리금 861,374,725원을대위변제하였고, 법적 절차비용 4,244,093원, 추가보증료 4,303,270원을 더한 합계869,922,088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K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 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은 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D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는 2019. 10. 17. 분할상환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H가 위와 같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 일자경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하여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2020. 3. 17.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I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인 2018. 5. 24. 체결된 것이다.

나) H는 2019. 9. 16. 내지 2019. 10. 2.까지는 I에 3건의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 H의 신용·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정욱도, 판사 김미란, 판사 노재승